



응용생태공학회

Korean Society of Ecology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정관

정관

2013. 04. 16. 제정
2016. 11. 03. 개정
2018. 09. 17. 개정
2018. 12. 10.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응용생태공학회라 칭한다(이하 학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Ecology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도로/철도, 항만, 공항, 댐/하천, 상하수도/폐수·폐기물처리시설, 도시 및 단지 등 사회 기반시설 분야에서 생태학적 원리를 응용한 설계, 시공 및 관리 기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수행과 정책개발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1. 이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텔 1514호에 둔다.
2.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응용생태공학에 관련되는 학술분야의 연구, 교육 및 지도
2. 회지, 논문집 및 관련기술서적의 간행
3. 토론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강습회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시찰
4.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교류
5. 응용생태공학 관련 기술의 개발
6. 정부, 공공단체, 기타기관이 의뢰하는 응용생태공학에 관련된 기술연구 및 분석 업무의 수행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참여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3.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응용생태공학과 관련된 교육, 연구, 설계, 정책개발 등 직접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대학원 재학생 포함).
4. 학생회원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부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5. 단체회원은 건설 및 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6. 명예회원은 응용생태공학과 관련된 학문 또는 전문영역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면제한다.
7. 참여회원은 응용생태공학과 관련된 학문 또는 전문영역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회장 또는 4년 이상 이사를 역임하고, 학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8.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소정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3.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회비)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등으로 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종신회비는 연회비를 대신한다.
3.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조(회원의 제명 및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 ② 본회의 사업을 태만히 하거나 저해한 때
 - ③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 ④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2.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조(임원 및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8인 이내
 - ③ 감사 2인 이내
 - ④ 이사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출)

1. 임원중 회장, 감사는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단 초대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단 초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정회원이 아닌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에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2조(고문)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정회원 중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4장 총회

제 13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의 구성은 정회원, 명예회원, 참여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득실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 사항의 승인 등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 2월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소집하며, 회의 소집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 ④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5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적구성원인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의 의결제척) 재적구성원인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와의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1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가입 승인 및 제명
2.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장, 감사의 자격 및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감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제 19조(이사회 의 성립 및 의결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이사회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 20조(위원회)

1. 회장은 본회의 업무집행 및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21조(사무국)

1.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및 지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사무국은 각종 현황을 취합·검토·집계하여 회장,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기금을 관리, 집행한다.
4. 사무국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 및 당해 회의 출석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2조(적용) 이 학회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 23조(회계기준과 회계단위)

1.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 운영현황 및 자금의 수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계단위는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와 그 이외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24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찬조금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 25조(기금운영 및 적립금)

1. 회장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조(회계 연도)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찬조금(기부금) 모금액 및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2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29조(기록의 보존) 이 정관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보존 연한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장 보칙

제 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해산후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3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조(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12. 10.)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